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8. 5. 14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년 5월 6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5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2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98. 5. 14) 내무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가. 제안이유

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「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」의 지방세 지원방안중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“배기량 2,000㎤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”를 “배기량 2,000㎤이하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,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, 이륜자동차”로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제2조).
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“배기량 2,000㎤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”를 “배기량 2,000㎤이하 승용자동차, 승차 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,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, 이륜자동차”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,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중 “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”를 추가로 신설했(안 제4조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안봉환)

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 방안중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지방세법 제7조에 “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되어 있고, 같은 법 제9조에는 “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·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”라고 되어 있는 바, 내무부 세제 13400-37('98. 2. 12)호 및 경기 세정 13400-277('98. 2. 18)호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(안) 통보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